

# Contents

## 01 열려라 중국

-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받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중국팀 정철 변호사)

## 04 생생 러시아

-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 개관(下) (마명원 변호사)

## 09 Vietnam LIVE!

- 베트남 내 유통시장 진출 (한승혁 호주변호사)

## 11 주목! 이 판례

-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안감조성행위의 처벌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8도 4351 판결)

## 16 최신법령

-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확대

## 18 지평소식

- 베트남·아세안팀 뉴스레터 정기칼럼 기고 시작
- 이행규 변호사
  - 금호그룹 전문 아카데미 강의
  - 산업은행 법무실 초청 특강

## 20 영입인사

- 류용현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열려라 중국)

##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받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중국팀 정철 변호사

###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과 경영자 집중 신고

그 동안 많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중국의 반독점법(反壟斷法)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독점법에 포함된 경영자집중에 관한 신고는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결합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도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기업과 기업결합, 즉 M&A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분인수 또는 자산인수방식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독점법상의 규정 이외에 국무원이 제정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신고 규정')'이 시행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가 필요한 경영자집중의 범위

반독점법은 경영자집중을 (i) 합병, (ii) 주식 또는 자산 취득을 통한 통제권 취득, (iii) 계약 등을 통한 통제권 취득 또는 다른 경영자에 대하여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행위(반독점법 제20조, 신고 규정 제2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영자집중 중에서 다음 기준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영자는 경영자집중을 행하기 이전에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전신고 원칙).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자집중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반독점법 제21조, 신고 규정 제3조).

(1) 경영자집중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전 세계를 기준으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하여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동시에, 그 중 2개 이상의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경영자집중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하여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는 동시에, 그 중 2개 이상의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수집된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는 당해 경영자집중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고 규정 제4조). 사전신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i)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자회사들을 결합하는 경우 및 (ii) 특정한 동일 경영자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회사들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반독점법 제21조).

### 경영자집중 신고 절차

신고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간이심사를 진행하여 중점심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심사 기간 내에는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없으나, 중점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자는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25조). 중점심사가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금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26조). 중점심사 기간 내에는 역시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는 해당 경영자집중에 대해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한성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29조). 또한 외국자본이 경내기업을 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에 참여한 경우로서 이것이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반독점법이 규정한 경영자집중 심사 외에 추가로 관련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반독점법 제31조).

### 경영자집중에 관한 규정 위반의 경우

경영자가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자집중을 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는 경영자집중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및 기타 경영자집

중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인민폐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48조). 다만, 이와 별도로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의 처분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먼저 행정재심을 거친 후,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51조).

###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신고의 문제점

반독점법상의 경영자집중 신고와 관련하여 (i) 사전신고의 기준시점 및 (ii) 신고시 제출이 필요한 '경영자집중의 협의내용'에 관한 문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제한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떠한 경우에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으로 판단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생 러시아)

##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 개관 (下)



러시아-CIS팀 마명원 변호사

###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 개관(上) 보기

1. 서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3. 부당공동행위 제한

### 4. 정부보조금 등 지원행위 규제

주정부 보조금 등 지원행위 규제는 2006년도 경쟁보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재산권 및/또는 민사상 권리를 이전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특정 시장 내 사업활동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제4조 제20호).

경쟁보호법상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 극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주민의 생존보장
- 기초과학 연구수행
- 환경보호
- 문화개발 및 문화유산의 보존
- 농산품 생산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주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 미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공 및 취업지원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i) 연방법령에 의하여 직접 제공되거나 (ii) 연방예산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법령에 의해 제공되거나 또는 (iii) 연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금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닌 한 반독점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제공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은 반독점청에 승인을 위한 신청서, (a)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안(보조 목적, 예산포함), 그리고 (b) 2년 내 수혜자의 활동내역과 생산·판매제품의 목록, 대차대조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반독점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2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제5항). 반독점청이 승인할 경우 관계당국은 반독점청 승인서에 명시된 제한을 준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주정부 보조가 제공된 날로부터 1월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0조 제6항).

## 5.1 회사설립 규제

회사 발기인들은 (i) 설립 중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주식 및/또는 다른 사업자의 자산에 의해 납입되고 회사가 해당 주식의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의 1/3 이상, 1/2 이상, 2/3 이상을 취득하며, 회사발기인의 총 자산가치가 6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ii) 또는 (iii) 회사 발기인들이 상품매출로 벌어들인 직전 사업연도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i) 회사 발기인 중 일방이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인 경우 회사설립에 앞서 반독점청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4호).

한편 설립 중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금융기관의 주식 및/또는 자산으로 출자되고 회사가 해당 주식의 25%이상, 50%이상, 75%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의 1/3 이상, 1/2 이상 2/3 이상을 취득하며, 발기인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연방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독점청에 사전 설립신고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5호).

## 5.2 M&A 등 기업결합 규제

### 가. 합병 (Merger and Consolidation)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i) 회사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ii) 상품매출로 벌어들인 직전 사업연도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i) 당사자 중 일방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합병 당사자 또는 흡수합병회사는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의 합병에 있어서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연방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합병 당사자 또는 흡수합병회사는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3항).

**나. 인수 (Acquisition of an Interest, Assets and Rights in a Russian Company)**

(1)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금융기관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의 1/3 이상, 1/2 이상, 2/3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지난 영업연도의 상품매출을 통한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고 대상회사 및 그 기업집단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치가 1억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또는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 중 하나가 시장점유율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2)자산취득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회사의 중요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 해당 자산이 양도회사의 중요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치의 20% 이상일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반독점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제7호).

-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지난 영업연도의 상품매출을 통한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고 대상회사 및 그 기업집단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치가 1억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 인수자 또는 인수자 단체 중 하나 또는 대상회사 또는 그 기업집단 중 하나가 시장점유율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3) 권리취득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대상회사의 경제적인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러시아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권의 변경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반독점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제8호).

- 인수자(기업집단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지난 영업연도의 상품매출을 통한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고 대상회사 및 그 기업집단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치가 1억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 인수자 또는 인수자 단체 중 하나 또는 대상회사 또는 그 기업집단 중 하나가 시장점유율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실제 반독점청은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역외 합병 또는 주식취득 거래를 감시합니다. 반독점청은 간접적인 통제권 변경의 결과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가 러시아 법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자산규모에 따라서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단지 반독점청에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치 또는 총 수입이 2억 루블 이상인 경우 합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독점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

자산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반독점청은 인수자 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규모를 고려합니다. 기업집단에는 지분 소유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사실상 지배 매커니즘에 의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연인, 단체 및 법인이 포함됩니다.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M&A가 이루어 지고,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경쟁보호법은 사전승인 없이 거래를 종결한 후 45일 내에 반독점청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승인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3항). 이 경우 기업집단 구조는 해당 거래에 앞서 한 달 전에 반독점청에 제출되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됩니다(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경쟁보호법은 반독점의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지분, 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보호법은 금융기관이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절차 및 소요시간 (Procedures and Timing)**

반독점청은 회사의 설립, 합병, 권리취득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로 하여금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출된 후 반독점청은 30일 동안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심사합니다(제33조 제1항). 반독점청은 추가적인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2개월 범위 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항).

## 6.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Unfair Competition)

경쟁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금지됩니다(제14조 제1항).

- 다른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부정확한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포
- 재화의 품질 및 수량, 성질, 생산방식 및 생산지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 잘못된 상품 비교행위
- 상표, 로고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에 의한 재화의 판매
- 영업비밀에 속하는 과학적·기술적, 생산 또는 영업정보의 부정수령, 부정사용 및 부정공개행위

## 7. 공공부문 입찰관련 규제

모든 연방·지방 정부, 연방헌법상 기관 그리고 자연독점적 주체는 경쟁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여 하고, 그 절차는 연방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반독점청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은 해당 거래 또는 경매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Vietnam LIVE!)

## 베트남 내 유통시장 진출



베트남·아세안팀 한승혁 호주변호사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일정에 맞춰 올해까지는 합작투자형태로만 가능했던 외국인의 유통업 진출이 2009년 1월 1일부터 단독투자형태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베트남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도매업
- 소매업
- 대리점
- 프랜차이즈
- 수출입업

다만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허가신청서 제출 시, 희망하는 업종을 명시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희망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투자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부(제한적) 투자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중앙정부 부처인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의 투자심사를 거쳐 투자에 대한 서면승인을 득한 후,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단, 투자신청서는 DPI에 일괄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는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매(Retail sales outlet) 1호점 개설허가의 경우, 투자자는 최초투자신청서에 소매1호점 관련 내용과 법률이 요구하는 타당성조사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MOIT는 유통업 허가 와 연계하여 소매1호점 개설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MOIT의 승인여부를 사업소재지 관할 DPI에 서면통보 합니다. 2호점 이상의 개설허가도 절차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개설허가 를 위한 심사의 기준은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의 경우는 별도의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업 투 자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정한 요건이란 베트남 내에서 일정기 간(2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 [※실무 Tip]

베트남 상법시행령에 의거 외국인의 수출입업과 유통업에 대한 합작투자가 법률상으로 가능 했던 2007년 초부터 상법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초까지 약 일년간 MOIT는 상법시행규 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외국투자자의 수출입업과 유통업에 대한 승인을 유보해 왔습니다. 2009년 1월1일 이후 외국투자자의 유통업 단독투자신청에 대해 MOIT가 어떠한 접근 방식을 택할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HLG

(주목! 이 판례)

##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안감조성행위의 처벌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8도 4351 판결
- 사건명: 무고 등

### 1. 서설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간략히 '정통이촉법'이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누설' 등의 행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한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위법행위는 주로 '공직선거법'에서 탈법 선거운동 행위로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안겨 주거나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가 심심찮게 문제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바로 그에 관한 사례입니다.

### 2. 구성요건의 의미와 다른 죄와의 관계

#### (1) 정통이촉법의 규정

정통이촉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하에서

1

정통이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위 전기통신기본법 규정 상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는 이 규정 위반의 범죄를 '이 사건 범죄'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범죄를 '반의사불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구성요건의 의미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안감조성행위'가 문제된 다른 사건의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위 법조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자칫하면 수신자의 마음에 거슬리는 통신은 모두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위 법조항의 '공포심'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란 문자로 보내진 통신의 내용이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걱정·근심이나 약간의-공포심에는 이르지 않는 정도의-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6년 12월 28일 선고 2006고단 5604 판결).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전적 정의를 인용하여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년 4월 17일 선고 2007노 146 판결).

(3) 형법상 협박죄와의 관계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년 8월 25일 선고 2006도 546 판결 등),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중략)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07년 9월 28일 선고 2007도 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 점, '반복'을 요하지 않는 점과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와 차이가 있지만, 만약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 경우에는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4)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와의 관계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불안감조성"이란 표제 하에 "정당한 이유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사람" 등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년 8월 24일 선고 99도 2034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역시 불안감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반복성"을 요하지 않는 바, "반복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적어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 (1) 이 사건의 주된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5년 2월 14일 17시 12분경 "전화받아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 2005년 5월 24일 19시 52분경 및 19시 57분경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 2005년 9월 18일 14시 32분경 "개새끼야"라는 내용으로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 (2) 부가적인 사정들

한편 위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가등기권리의 처분금지처분신청, 탈세·대부업법위반·부당이득 혐의의 고소·고발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위 임의경매신청,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고소 등의 조치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인 공소외 甲이 1심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

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을 담당한 원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정통이촉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년 5월 2일 선고 2008노 36 판결).

**4. 대법원의 판단과 대상 판결의 의의**

(1)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대법원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2)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전제 하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개월 동

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2005. 5. 24.자 2회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위 부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반복성에 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연히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3) 대상 판결의 의의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본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시 31분경부터 21시 46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아내의 간통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반복성'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판시하지 않았습니다(위 2007노 146 판결).

대상 판결은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반복성"의 의미에 관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견해를 밝힌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제한 해석"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8도 4351 판결](#)

(최신 법령)

## 1.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 소액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한도액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광역시는 1천4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한도는 2001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세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소액임차인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2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70호)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2억 6천만원 이하(2천만원 증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억 1천만원 이하(2천만원 증액), 광역시는 1억6천만원 이하(1천만원 증액),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 증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66호)

그 동안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평소식)

## 베트남·아세안팀 뉴스레터 정기칼럼 기고 시작

『법무법인 지평』베트남·아세안팀에서는 지평 뉴스레터 제58호, 2008년 9월호부터 'Vietnam LIVE!'라는 제목으로 정기칼럼 기고를 시작합니다.

그 동안 비정기적으로 베트남 관련 칼럼을 실어왔는데, 지평 베트남 업무의 확대에 맞추어 그리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기적으로 칼럼을 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Vietnam LIVE!"는 베트남 경제와 법률의 흐름을 생생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고객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베트남·아세안팀은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소개]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아세안팀 업무 안내
-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티 지사 안내

### [베트남·아세안팀]



양영태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변희경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김혜연 미국변호사

### [호치민시티 지사]



김도요 변호사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Nguyen Van Dam  
베트남변호사

(지평소식)

## 이행규 변호사

### 1. 금호그룹 전문 아카데미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는 8월 14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금호그룹의 초청을 받아 '금호그룹 전문 아카데미'에서 'Project Financing의 법률 문제'에 대해 강의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무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roject Financing'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2. 산업은행 법무실 초청 특강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는 8월 12일 산업은행 법무실의 초청을 받아 '미국증권금융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행규 변호사는 미국증권규제의 개요 및 최근 동향, Sarbanes-Oxley Act 의 개요 및 최근의 평가 및 Sub-prime 사태와 자본시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산업은행의 법무 및 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미국증권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영입인사)

## 류용현 회계사



### □학력사항

- 대전 한밭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졸업

### □경력사항

- 제 36 회 공인회계사 시험합격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세무본부 근무
- 법무법인세종 자문본부 근무
- 현 법무법인 지평 회계컨설팅 공인회계사

### □인사말

금번 지평의 회사파트에 입사한 류용현 회계사입니다.

저는 지평에 입사하기 전 삼일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세종에서 7 여년 동안 주로 회계감사, 화의 및 법정관리 조사, M&A, 세무조정, 세무자문, 세무실사 및 세무조사 대응업무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무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와 M&A 및 각종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세무관련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의 여러 유능하신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분들께서 지평의 도움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지평

## HORIZON LAW GROUP

<http://www.horizonlaw.com>

### 서울 본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